

---

**SW융합클러스터 2.0**  
**2021년 SW융합 제품/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**  
**추가 공모 안내서**

---

**2021. 05**

**ITP** 인천테크노파크  
INCHEON TECHNOPARK

## I 사업목적 및 개요

### □ 사업목적

- 인천지역 산업에 DNA(Data/Network/AI)기반의 비즈니스 접목을 통해 SW융합 분야의 신기술·신제품·신서비스 창출.
- 다양한 SW융합분야의 新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연계 등을 지원하여 지역 내 DNA 기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.
- 상용화 신청기업의 데이터와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.

### □ 사업개요

- (수행기간) 협약체결일 ~ 2021년 11월  
 ※ 수행기간은 ITP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(지원규모) 총 220백만원 지원  
 - (자유)과제당 70~110백만원 사이(총 사업비의 80%이내 자금 지원)

지원금		민간부담금
자유	과제당 70~110백만원 사이 지원 (총 사업비의 80% 이내)	총 사업비의 20% 이상 의무매칭 (현금비율 15% 이상)

※ 단,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)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

- (주요내용) 인천지역 SW융합기업의 DNA(Data, Network, AI) 기반 新서비스 상용화 지원.

## III | 지원내용 및 조건

### □ 지원분야 : 자유과제

- (자유과제)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SW융합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신제품/신서비스 상용화 과제(2개 과제 내외 선정)



<데이터 기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실증데이터 확보 및 상용화>

### □ 지원조건

- 사업기간 내 지원 신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기반으로 완제품 (제품 개발, 기능 개선 등) 혹은 서비스(시장창출이 가능한 상용화 솔루션) 개발이 가능한 과제 지원
- 선정기업은 사업수행 시 발생·수집되는 데이터를 인천테크노파크에서 구축하는 新서비스 플랫폼에 제공하여야 함
  - ※ ITP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데이터를 편집·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함
  - ※ 데이터 제공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은 추후 안내 예정

### □ 준수사항

- 본 사업은 “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사업 관리 규정”기준으로 사업 수행.

- 선정기업(주관 및 참여 동일)은 2021년도 ITP가 추진 예정인 SW기술인력 양성 교육과정(인공지능, 데이터, 블록체인) 수료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.(6개월 이상)
- 선정기업(주관 및 참여 동일)은 제직중인 직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2021년도 ITP가 추진 예정인 SW기술인력 양성 교육과정(인공지능, 데이터, 블록체인)을 수료하여야 함.
  - ※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교부 신청 전에 ITP에서 제공하는 SW기술인력 양성 교육과정 접수 가이드에 따라 교육 접수 후 “교육대상 확인서”를 발급 받아 사업비 교부 시 신청서와 함께 제출.
-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, 모집기한 내 일부 미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미 접수 처리 함.
- 최종 선정 과제 수는 총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사업 별 차등 지급 할 예정이며, 선정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음.

## III | 지원대상

### □ 지원대상

- (주관기관) 인천지역 소재 중소 SW융합기업
  - 자유과제
    -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외부에서 정식절차로 구매한 데이터 기반으로 상용화 사업이 가능한 기업.
    - 반드시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지원하여야 하며, 주관(기업)기관의 본 과제 참여율 및 배정예산 50% 이상 필수.
- (참여기관) 제안분야의 상용화(개발)에 참여하는 기업, 연구소 등
  - 참여기관은 반드시 인천 소재 기업 또는 기관
    - ※ 참여기업(기관)도 접수당일 현재 본사 소재지가 인천인 기업(단, 타 지역 기업의 경우 협약 후 3개월 이내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포함)

□ 지원제외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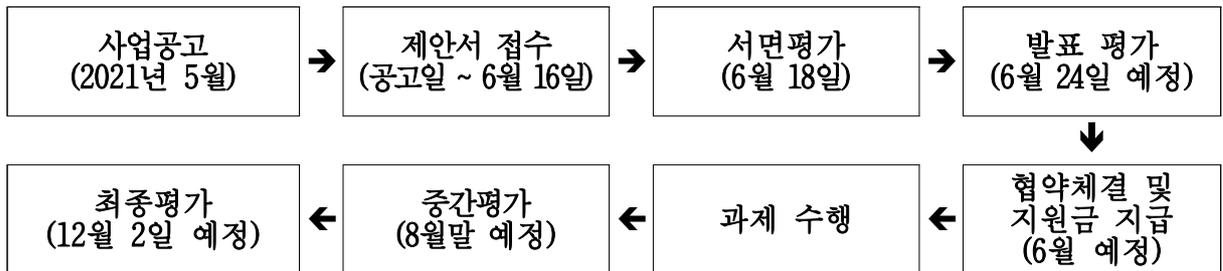
-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아래에 해당될 경우 신청 불가

- ▷ 기지원 여부(중복): 신청과제가 정부 및 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 부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  - ※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가능
- ▷ 참여제한 여부 :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,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▷ 부적격 여부 : 국세(지방세) 체납처분 등

## IV | 선정 및 평가

□ 선정방법

- (평가위원) 외부전문가(7명 내외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
- (추진절차)



※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- (평가방법)

- 평가위원 최고, 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(평균) 70점 이상인 기업 선정(사업협약 포기 시 차 순위자 선정)

※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□ 평가기준(공통)

- 중복성 검토

- 신청과제와 유사 또는 동일 과제로 정부지원을 받은 과제에 관하여 검토 후 관련성 없는 신청과제만 서면평가 실시.

### ○ 서면평가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보유 데이터 확인 및 데이터 적합성	- 기업의 보유 데이터 제출 유무 - 보유 데이터와 지원 과제와의 연관성	35
필요성 및 추진계획 타당성	- 수요자 관점에서 해당 기술개발의 필요성 - 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중요도 - 개발방법의 타당성 및 목표의 적정성·명확성	35
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	- 사업화단계 진입 가능성 및 사업화 전략·계획의 적정성 - 경제적 효과(수익성, 매출, 수입대체 및 수출, 일자리창출 효과 등)	30
합 계		100

※ 서면평가는 70점 이상인 기업을 4개사 내외로 선정하여 통보.

### ○ 발표평가

평가항목	세부항목	평가지표	배점
필요성 및 추진계획 타당성 (25점)	상용화 필요성	- 수요자 관점에서 해당 상용화의 필요성 및 시급성 - 기술적·정책적·경제적 중요도	5
	사전준비성	- 기 개발 여부 검토 등 사전조사/ 준비성 - 해당 개발제품(기술)의 시장 환경 이해도	10
	상용화(개발) 목표의 적정성·명확성	-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개발방법의 타당성 - 기간 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	10
기술성 및 사업 수행능력 (25점)	기술성	- 상용화 기술(제품·서비스)의 차별성 및 혁신성 - 상용화 기술(제품·서비스)의 기술적 우수성	10
	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	-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/실현가능성 - 사업목표 대비 사업비 구성 및 규모의 적정성	10
	추진체계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	- 총괄책임자/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- 사업 추진인력의 역할분담 및 구성의 적정성	5
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(50점)	사업화 가능성	- 과제 결과물의 사업화단계 진입 가능성(완성도)	10
	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우수성	- 제품홍보, 판로확보, 판매전략, 수요처 등의 적정성 - 사업화 단계별 계획의 구체성	15
	파급효과	- 수익창출, 수출,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	15
	실증데이터 생성	- 당 사업 수행을 통해 확보 가능한 데이터 유무	10
합 계			100

※ 외부 환경 요인으로 “비대면 발표” 평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,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 V 사업관리

### □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총괄주관 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와 협약 체결.(평가 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수정사업계획서 등 협약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동시에 협약)
- 총괄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 수행주관기업에 협약 내용에 준하여 사업비 지급.

### □ 사업비 관리

- 수행기업은 사업비를 반드시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, 과제 수행 주관기업명의 독립된 별도의 계좌로 관리 및 사업비 집행 카드는 반드시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만 사용.
- 인건비 산정
  - 인건비 산정 시 기업소속 참여 직원(연구원)의 인건비를 ‘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’에 따라 산정.
  - ※ 자세한 사항은 ‘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사업 관리 규정’ 내 ‘[별첨] 사업비 산정기준’ 참조
- 간접비 산정불가(주관 및 참여 동일)

### □ 기타사항

-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데이터는 사업 수행기관(기업)과 인천TP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 및 제공 한다.
- 사업수행 중 수행주관기업의 귀책으로 협약이 해약되거나, 각종 이행 사항 위배, 불성실 중단·불성실실패 등의 과제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 및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실시.
- 사업수행 중에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행주관기

관에서 총괄주관기관에 수행계획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변경 신고·변경승인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.

- 중소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 따른 기업.
- 이 공모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(방송통신발전 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관련 사업 관리 지침 등 제반 규정)에 따름.
- 기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정하는 관련 규칙, 지침 및 기준 등

## VI 추진일정

세부일정	2021년 사업기간(단위 : 월)											비고	
	2	3	4	5	6	7	8	9	10	11	12		
사업계획 수립	■	■	■										
과제공고 및 접수				■	■								
업체 선정평가					■								발표평가
협약체결					■								
과제수행					■	■	■	■	■	■			
연차(중간)평가							■						발표평가
최종 결과보고											■		보고서
최종평가												■	발표평가
사업비 정산												■	결과통보

※ 추진절차 및 진행일정은 주관기관의 사업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VII 신청방법

### 신청서 접수

- (접수방법)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 제출서류 원본을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
  - SW융합클러스터 송도센터([www.biplex.or.kr](http://www.biplex.or.kr)) 홈페이지 사업공고 → BI-Plex 사업공고
- (공고기간) 공고일 ~ 6. 16(수), 15:00까지
  - ※ 온라인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하며, 접수 당일 신청기업들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접수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. 접수 마감시 제출 불가.

### 제출서류

구분	과제 신청시 제출서류	부수	비고
1	사업계획서	1부	ITP 제공 서식
2	수행기관 사업자등록증(주관, 참여 동일)	각1부	-
3	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(주관, 참여 동일)	각1부	ITP 제공 서식
4	신청자격 적정성 자기진단서(주관, 참여 동일)	각1부	ITP 제공 서식
5	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1부	ITP 제공 서식
6	수행기관 신규인력 채용계획(주관, 참여 동일)	1부	ITP 제공 서식
7	수행기관 중소기업 확인서(주관, 참여 동일)	각1부	발행기관 서식
8	수행기관 2019, 2020년도 재무제표(주관, 참여 동일)	각1부	-
9	수행기관 국세·지방세 완납 증명서(주관, 참여 동일)	각1부	원본 대조필 날인
10	현금출자(납입) 약속서	1부	ITP 제공 서식

### 접수·문의처

- (이 때 일) sky@itp.or.kr
- (주 소)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문화로119 인천글로벌캠퍼스 지원센터동 2층 2033호(우편번호 : 21985)
- (문 의 처) 인천테크노파크 SW진흥센터 박봉배 과장 ☎ 032-714-9820

[참고자료]

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(제27조, 제28조 관련)

[출연금 등 지원기준]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인 경우	그 외의 경우
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% 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% 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5% 이내	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% 이내

[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]

중소기업인 경우	중견기업인 경우	대기업인 경우	그 외의 경우
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% 이상	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1% 이상	연도별 민간부담금의 35% 이상	필요시 부담

\* 단,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)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 부담금의 5%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

※. 출연금 및 현금부담 조정 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ITC산업 지원협조 요청(정보통신산업 정책과-699)” 공문 기준, 한시적으로 적용